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0가단6922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이진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고은, 이강혁, 조규백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6.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① C, ② D, ③ E·F 및 G, ④ H, ⑤ I, ⑥ J의 교좌장치¹⁾ 철거 및 블럭아웃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교좌장치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7. 18.부터 2019. 12.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교좌장치 공사대금으로 합계 107,9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C 공사대금 54,600,000원, ② D 공사대금 17,800,000원, ③ E·F 및 G 공사대금 37,400,000원, ④ H 공사대금 12,300,000원, ⑤ I 공사대금 14,800,000원, ⑥ J 공사대금 20,750,000원 등 이 사건 교좌장치 공사대금 합계 157,650,000원 중 기지급대금 107,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 공사대금 42,900,000원, ② D 공사대금 10,400,000원, ③ E·F 및 G 공사대금 29,350,000원, ④ H 공사대금 8,400,000원, ⑤ I 공사대금 5,400,000원, ⑥ J 공사대금 9,600,000원 등 이 사건 교좌장치 공사대금은 합계 106,050,000원이나 기지급대금이 107,900,000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C 공사대금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159개소의 교좌장치 철거작업을 하였고 작업 단가는 개소 당 35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P10, P11 교각의 각 8개소 합계 1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43개소의 교좌장치 철거작업을 하였고 작업 단가는 개소 당 300,000원이었다고 다툰다.

우선 작업 단가에 대하여 보건대, 원피고 사이에 개소 당 단가를 피고가 인정하는 3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작업 단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작업량에 대하여 보건대, 갑 2,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P10, P11 교각의 각 8개소 합계 16개소를 포함한 도합 159개소의 교좌장치 철거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대금은 47,700,000원(= 159개소 × 3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D 공사대금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1차로 인부 2명이 투입되어 4일간 작업하였고 그 과정에 소요된 인건비, 장비대, 식대, 숙박비 등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1일 1,250,000원씩 4일 합계 5,000,000원(= 1,250,000원 × 4일)으로 약정하였으며, 2차로 32개소의 교좌장치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개소 당 단가 400,000원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12,800,000원(= 32개소 × 4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차 작업 대금은 800,000원, 2차 작업 대금은 단가 300,000원을 적용하여 9,600,000원(= 32개소 × 3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다툰다.

우선 1차 작업 대금에 대하여 보건대,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인정하는 8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1차 작업 대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차 작업 대금에 대하여 보건대, 감정인 L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약정된 이

부분 작업 단가가, 피고가 인정하는 3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작업 단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대금은 10,400,000원[= 1차 작업 대금 800,000원 + 2차 작업 대금 9,600,000원(= 32개소 × 3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E·F 및 G 공사대금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E 교좌장치 38개소, F 교좌장치 21개소, G 교좌장치 38개소 등 합계 97개소의 교좌장치에 대하여 철거작업을 하였고 작업 단가는 E·F의 경우 개소 당 300,000원, G의 경우 개소 당 400,000원이므로 교좌장치 철거작업 대금은 합계 32,900,000원[(38개소 + 21개소) × 300,000원 + 38개소 × 400,000원]인데, 여기에 위 작업과 구분되는, 유압잭 거치를 위한 깨기작업 등이 추가되었고 그 대금은 4,500,000원이므로, 이 부분 공사대금은 37,400,000원(= 32,900,000원 + 4,5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교좌장치 95개소에 대하여 철거작업을 하였고 작업 단가는 개소 당 300,000원이므로 교좌장치 철거작업 대금은 28,500,000원(= 95개소 × 300,000원)인데, 여기에 유압잭 거치를 위한 깨기작업이 추가되어 그 대금 850,000원(= 17개소 × 50,000원)을 가산한 29,350,000원이 이 부분 공사대금이라고 다룬다.

우선 교좌장치 철거작업량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철거한 교좌장치의 개수가 피고가 인정하는 95개소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를 위하여 인천지방조달청이 안산시 단원구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주식회사 M으로부터 납품받은 교량받침이 모두 95개인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교좌장치 철거작업량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철거 교좌장치가 95개소를 초과한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교좌장치 철거작업 단가에 대하여 보건대, E·F의 작업 단가가 개소 당 3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G의 작업 단가에 대해서 원고는 개소 당 4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개소 당 300,000원이라고 다투는바, 감정인 L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약정된 이 부분 작업 단가가, 피고가 인정하는 3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G 작업 단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유압잭 거치를 위한 깨기작업 등 대금에 대하여 보건대, 원피고 사이에 이 부분 작업 대금을 피고가 인정하는 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작업 대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8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대금은 29,350,000원[= 교좌장치 철거작업 대금 28,500,000원(= 95개소 × 300,000원) + 깨기작업 대금 8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H 공사대금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28개소의 교좌장치를 철거하였고 개소 당 작업 단가를 3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교좌장치 철거작업 대금은 8,400,000원(= 28개소 × 300,000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천공작업 대금 3,9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는 천공작업이 N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천공작업 대금채무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공작업을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이 피고로부터 H 연단확대 천공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천공작업 대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대금은 앞서 본 교좌장치 철거작업 대금인 8,4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5) I 공사대금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4개소의 교좌장치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단가는 개소 당 600,000원이므로 작업 대금은 14,400,000원(= 24개소 × 6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8개소의 교좌장치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단가는 개소 당 300,000원이므로 작업 대금은 5,400,000원(= 18개소 × 300,000원)이라고 다툰다.

우선 작업량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철거한 교좌장치의 개수가 피고가 인정하는 18개소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작업량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철거 교좌장치의 개수가 18개소를 초과한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작업 단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1차 작업 후 교좌장치의 면적과 중량 등 예상보다 많은 작업량을 이유로 피고의 양해 하에 2차 작업을 중도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만일 원피고가 당초 교좌장치 철거작업 단가를 600,000원에 합의하였다면 원고가 위 작업을 중도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약정된 교좌장치 철거작업의 단가가, 피고가 인정하는 개소 당 3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작업 단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커팅작업 대금 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커팅작업이 피고가 인정하는 교좌장치 18개소 철거작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커팅작업이 피고가 인정하는 교좌장치 18개소 철거작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공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커팅작업 대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대금은 앞서 본 교좌장치 철거작업 대금 5,400,000원(= 18개소 × 3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6) J 공사대금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37개소의 교좌장치를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교좌장치 철거작업의 개소 당 단가가 350,000원으로서 그 작업 대금이 12,950,000원(= 37개소 × 3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교좌장치 철거작업의 개소 당 단가가 300,000원으로서 그 작업 대금이 11,100,000원(= 37개소 × 300,000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교좌장치 철거작업의 개소 당 단가에 대하여 보건대, 원피고가 교좌장치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개소 당 단가를 피고가 인정하는 3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교좌장치 철거작업 단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천공작업 대금 7,8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는 천공작업이 N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두고 있으므로, 천공작업 대금채무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공작업을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이 피고로부터 J 연단확대 천공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천공작업 대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사대금은 앞서 본 교좌장치 철거작업 대금인 11,100,000원(= 37개소 × 3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부분 작업과 관련한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수비 1,5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작업 대금에서 위 보수비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좌장치 공사대금 합계 112,350,000원(= C 공사대금 47,700,000원 + D 공사대금 10,400,000원 + E·F 및 G 공사대금 29,350,000원 + H 공사대금 8,400,000원 + I 공사대금 5,400,000원 + J 공사대금 11,100,000원) 중 기지급대금 107,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2.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1) 교좌장치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상부구조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고 지진, 바람, 온도 변화 등에 안전하게 적응토록 하는 장치이다. 교좌장치는 교량하중에 적응하고 신축을 흡수하게 함으로써 교량의 변위를 교각이나 교대에 직접 전달하지 않게 하고 완충기능을 거치게 하여 교량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내구 수명을 연장하도록 한다.